제 정 : 2022.12.01

주식회사 조흥

기업지배구조헌장

전 문

주식회사 조흥(이하 회사)은 "보다 좋은 품질, 보다 높은 영양, 보다 앞선 식품으로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"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, 건강한 식문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하여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.
조흥은 이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관리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주주, 고객, 직원,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.

제 1 장 이 사 회

제1조 (이사회의 기능)

① 주식회사 조흥의 이사회는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목표로 주주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여야 한다.
②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, 법령 및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 하여야 한다.
③ 이사회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, 경영진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.

제2조 (이사의 의무 및 책임)

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,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.
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,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.
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3조 (이사의 구성)

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

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.

제4조 (사외이사)

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,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②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며,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내·외부의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·직원이나 외부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5조 (이사회의 운영)

①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결정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

②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,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한다.

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,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주주

제6조 (주주의 권리)

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
1.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 참여권
2.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
3.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을 권리

② 정관의 변경, 합병 등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.

③ 회사는 1주 1의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④ 이사회는 합병,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⑤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.

제7조 (주주총회)
① 이사회는 다양한 주제의 의제 또는 의안이 주주총회에 상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의안을 분리하여 상정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.
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 및 감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⑤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이사회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때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.

제 3 장 감사기구

제8조 (내부감사)
① 감사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이어야 한다.
② 감사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,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,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, 회계처리기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.
③ 감사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재무담당 임원,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.
④ 감사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⑤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는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 (외부감사인)

①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요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여야 한다.

②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,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

제10조 (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)

이사회와 경영진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.

제11조 (정보공개)

①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회사의 정보를 적시에,충분히,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,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이해관계자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.

③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.

④ 회사는 정보 공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,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